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3. 3 선고 2020가단119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영석

피 고 B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 2021. 2. 3

판결 선고 2021. 3.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18.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8. 7. 24. 접수 제15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원고승계참가인과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여,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승 계 참 가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 2016 . 5. 26. 발행한 16억 8천 만 원의 무보증사모사채(사채원금의 상환기한 2018. 5. 26.)를 양수한 다음,피고보조참가인 및 그 연대보증인 소외 F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가합 555951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법원은 2020. 4. 23. "피고 보조 참가인과 F는 연대하여원고에게 1, 711, 037, 302원 및 그중 1, 698, 920, 712원에 대하여 2018. 2. 21. 부터 2019.3. 31. 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20 . 3. 23. 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전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 8. 27. 원고와 사이에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위가. 항기재양수금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고 이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7.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8. 7. 24. 접수제15560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2. 2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8. 6. 18.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8 회합 100044호).

[인정근거] 갑 제1,3, 4,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이사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계약의 취소및이사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소가 계속중인 바,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그와 같이 여러 개의 사해 행위취소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바,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피고 보조 참가인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서도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원고승계 참가인 에 게 피 고보조참가인 에 대 한 양수금채 권을 양도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은 바,원고가피고 보조 참가인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강제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 참가인의 2017. 12. 31. 기준 부채총계는 353,093,286,657원인 반면, 자본총계는 5,156,675,542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2018. 2. 26. 경 소외 G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이에 그 직전인 2018. 2. 21. 회생신청을 한 사실 이 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한소희

별지